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청계산서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11월4일 한경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계산 등산로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우리협회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을 산행을 즐기는 많은 등산객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 산업안전공단 인천지도원 주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간담회 열려

경인지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건설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해 11월 18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 및 건설안전지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도원 회의실에서 있었다.

인천지도원 박연홍 원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안전지원팀 임태열 팀장의 PC공사 붕괴사고 및 갯폼 낙하사고 등 재해사례소개 및 예방대책과 2006년도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국고사업(안) 설명이 있었으며, 참석자 상호간의 기술지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이어졌다.

##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신고 전자카드로 한다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 노동부가 작년 12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 공급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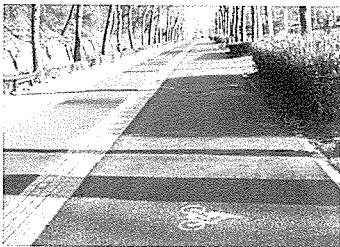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수혜율이 증가되고 건설현장의 업무 부담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개정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밖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일용근로자라면 취업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토지공사 신규조성택지에 보행자 안전성 강화키로



한국토지공사는 신규택지개발 지구 내 교통계획 수립 시 보행자, 장애인, 고령자등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교통 강화방안'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월 17일 시행방안을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차도보다 높이고 학교 앞 전면보도는 4m이상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토지공사 '녹색교통 강화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진출입구와 교차로 등의 주거지역내 횡단보도를 차도보

» 한경보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 참석



건설산업비전포럼 제32차 정기모임이 작년 12월27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개최 되었다. 국가 건설 산업의 비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이날 포럼에는 우리협회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사장, 한솔건설 유재철 사장, 한미파슨스 김종훈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대한주택공사의 U-City 개발동향과 공영개발 및 주거복지'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U-City 개발방향 및 주공의 대응, 주공과 공영개발, 주공과 주거복지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특히 한행수 사장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주거복지 동향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른



주공의 추진방향과 실현 수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철학 및 소신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 NEWS & PLUS

다 일정한 높이로 높여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왕복 4차로 이상 간선도로 보도에는 0.7m~1m 폭의 조정공간을 조성해 자전거 통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전면도로는 4m이상 거리를 충분히 유지토록 하며 단독주택단지내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길 가장자리도 포장을 함으로서 보행자 안전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2006년도 대형 건설업자 도급하한 고시

건교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2006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12월 22일자로 고시했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인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181개사(05년 168개사)이다. 또한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 미만으로 최고 8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참고로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84억원) 이상 공사는 대외개방 대상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661억원인 경우 이 금액의 1/100



에 해당하는 16억6,100만원 미만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내용중 도급하한금액의 적용대상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800억원이상) 및 도급하한의 최고액(84억원)은 전년보다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정으로 2005년도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도급하한의 최고액도 국가개방규모의 변경고시에 따라 전년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 » 롯데건설(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실무교육 실시



롯데건설(주)은 지난 12월 13, 14일 양일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기술 및 사례교육을 통한 안전실무 수행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기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실무교육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실시했다.

우리협회 기술지도부 주관으로 서울의 프리마호텔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롯데건설(주)의 재해사례 및 점검 우수사례 발표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허명수 차장의 KOSHA 18001 시스템 이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배계완 건설안전지원팀장의 중대재해 사고사례 연구와 서울보건대학 강원모 교수의 건설 분야 경영혁신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8,4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 등 24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4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한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 8,400억원 미만인 157개사도 공사예정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고시일부터 2006년도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 » 서민 주거용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설교통부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1월 8일 공포)을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난 12월 9일 입법예고한



### » 현대건설 제13회 안전경영대상 수상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제정하는 안전경영대상에서 현대건설이 건축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12월 12일 매경미디어센터 12

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현대건설(주) 잠실3단지 아파트재건축 현장이 건설업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주)이 시공하고 있는 잠실3단지아파트 재건축현장은 신 주거 문화 개척에 맞춰 인간중심의 주거 및 문화 창출에 앞장서게 될 잠실 지역에 39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잠실 3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현대건설(주)의 2개의 대형 건설사가 분할 시공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20층 이상의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이 현장은 200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작업인원이 투입되는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높이 80m 이상의 고소작업과 중량물 인양 등 각종 위험작업이 동시 복합적으로 진행 되는 바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현장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주)은 현장 자체적으로 도입, 추진한 안전경영시스템을 토대로 재해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해 이번에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다세대주택이며, 특히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

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내년 2월초부터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1만4천여동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올해 4월부터 대형 건설공사 현장 빗물정화시설 갖춰야

올해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빗물 정화 시설을 갖추어 환

경오염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위해요소를 방지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에서도 발생하는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5분간격으로 분석해 전송하는 자동수질원격감시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중 ▲면적이 25만평 이상되는 도시개발 ▲15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조성 ▲채광면적 30만평 이상 광업개발 ▲비행장 건설 ▲30만평 이상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 총 14개 개발사업과 부지면적 1만평 이상 제철소 건립지역 등이 빗물 정화시설 설치 대상이다. 따라서 개발 사업자의 경우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는 준공 때까지 빗물 정화시설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 » 대규모 투자사업 구상단계부터 검증 강화

내년부터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과제 선정 단계부터 결과물 활용도 평가에 이르기까지 용역수행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특히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중복투자 여부, 수요 추정의 적정

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재정운용 혁신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06.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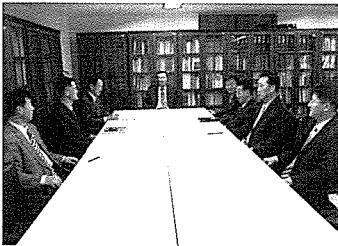
훈령에 의하면 재정투자 관련 용역은 용역과제 선정시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과의 중복여부,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심의받게 된다. 또한 용역시행 과정에서 중간검증을 의무화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용역과제별로 전문평가위원을 선임해 심의토록 하고, 용역수행자와 평가위원은 물론 발주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러한 용역결과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용역종료 후 정책에 반영시까지 용역성과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은 최초 사업구상시에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수요예측 및 투자의 적정성 등을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증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개시를 위한 내부검증을 강화토록 하였다.

참고로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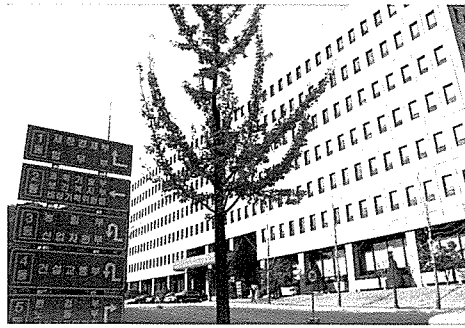
원장인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포함해 10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3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구성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의 훈령을 제정한 배경은 주요 국책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대부분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결과('04년 기준 총161건)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용역이 부실할 경우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중복투자 시비와 수요과다 추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간담회 개최



제77회 건설안전기술사 1차 합격자 간담회가 지난 11월11일 우리협회 회장실에서 개최 되었다. 대우건설 이섭범 소장 등 7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합격자들은 건설안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감에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관련기사 26, 2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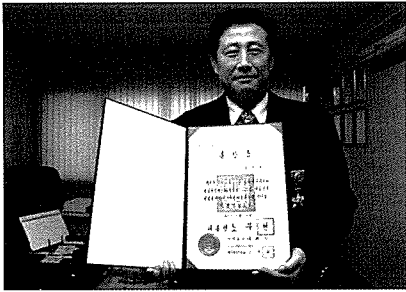
» 산업재해 최저보상금 9.15% 오른다



2005년 9월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하루 41,869원에서 45,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노동부는 8월31일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5가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①최고보상기준금액 ②최저보상기준금액 ③장의비 최고·최저금액 ④간병료 지급기준 ⑤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장해·유족급여 지급시 적용되는 ①최저보상기준금액(하루기준)이 작년 41,869원에서 45,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이로 인해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04년 기준)의 26.1%에 이르는 1만5천3백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의 지급시 적용되는 ②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1,249원에서 155,360원으로 2.7%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수준의 약 2.1배 수준이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③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10,814,947원, 최저금액은 7,525,147원으로 각각 4.4%, 6.3% 인상된다.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④간병료는 평균 7.4%가 인상되어 간호사 53,88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9,35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7,420원이 지급되고, 철야 간병시 50%가 가산된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⑤간병급여는 7%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일액 37,420원, 수시간병의 경우 24,940원이 지급된다. 이번 각종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8,000여명이 630여억원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이생구 회원 석탑산업훈장 수훈



(주)일신진흥 토목상무 이생구 회원이 고속국도 한남-반포 간 확장공사의 성공적 준공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2002년 10월 1일 착공해 지난해 10월 15일 준공

된 한남-반포 간 고속국도 확장공사는 총연장 2.4km의 한남-반포 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경부고속도로 최북단에서 서울도심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이다. 교통량이 매우 많은 난공사 구간을 성공적으로 한건의 사고도 없이 완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이생구 회원은 상습 정체도로였던 이구간의 완공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이곳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들과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업무수행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효율적인 시행과 관련한 동 제도의 운용체계의 정비방안으로서 설계감리의 업무수행지침과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것. 96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도입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그간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감

리 시행에 따른 업무수행지침과 대가기준이 없어 동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설계감리와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감리의 대상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국한해 오던 것을 2종 시설물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한편, 설계의 경제성검토(VE) 대상도 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한 바 있다.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내용을 살

펴보면, 설계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각종 구조물의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업무범위,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설계감리업무수행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감리수행에 따른 용역대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 공사비에 따른 일정한 요율을 제시하여 적정한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실비정액가 산방식도 병행 적용하도록 했다.

## » 협회 2006년 업무시무식과 함께 힘찬 출발

협회는 2006년 시무식 행사를 1월 3일 협회 3층 강당에서 한경보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힘찬 새해업무를 시작하였다. 한경보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각자의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협회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새해에도 재해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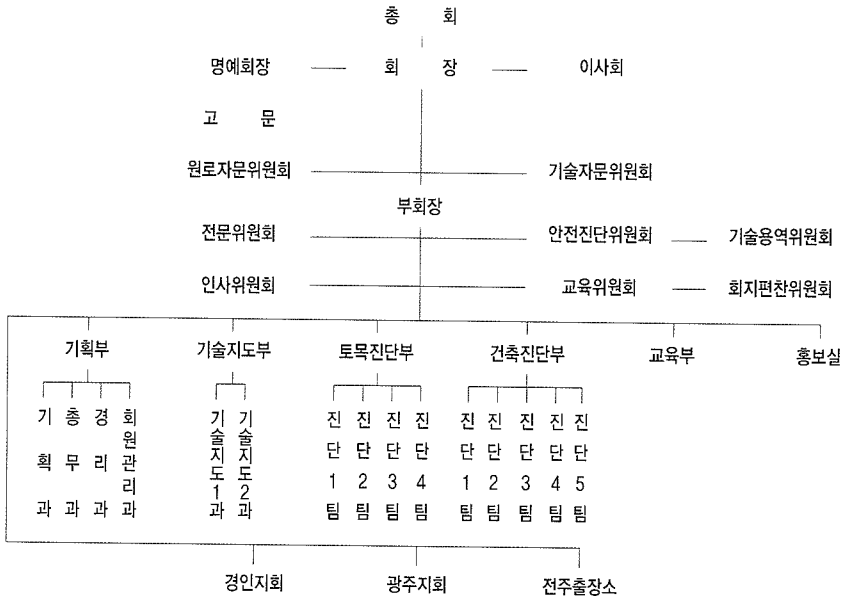


#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회원 및 직원동정
- 협회 업무 소개
- 조직도
-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 회원가입안내

## 조직도



##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구분	건설안전 기술사	건축시공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토질및기초 기술사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구조 기술사	건축사	공학 박사	건축품질시 험기술사	건설안전 기사	건축 기사	토목 기사	건설재료 시험기사	계
계	18	4	5	2	1	1	1	1	1	14	14	5	1	68

## 장비 보유현황

보유기종 : 101종(총 보유점수 293점)

- ▶ 지중탐사장비 : GPR, 금속관탐지기, 관로누수탐사기, 록볼트측정기
- ▶ 정적 동적변위측정장비 : PSM-200, DT-615, MB-BV
- ▶ 콘크리트 조사장비 : TVS 2000ST, 강도시험기 (슈미트 햄머, ULTRA SONIC, UTM)
- ▶ 철근탐사장비 : IRS 150/400, RC-RADAR, TR-01
- ▶ 강재탐사장비 : SITESCAN 130, 와류탐상기, 자분탐상기
- ▶ 환경측정장비 : 주파수분석기, RION, SSU2000아, 복합가스측정기
- ▶ 측량장비 : 광파기, 레이저 레벨
- ▶ 보조장비 : HILTI GUN, 무전기, 발전기, 유속계, 수중카메라



## 협회 업무 소개

### ■ 안전진단

#### ▶ 안전점검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 상 : 동법 제2조에 의한 1,2층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2회
  -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마다, 수중항만시설 4년마다)

#### ▶ 초기점검

- 법적근거 : 영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 과업범위 : -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한다.  
-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설정  
-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대 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의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 정밀안전진단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 상 : 공사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층 시설물  
정밀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판정시

리모델링 시행시 공사착수 전 안전진단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 ▶ 재건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동시행령 제42조의 2, 제44조 / 동시행규칙 제32조의 2
- 대 상 : 재건축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 ▶ 공동주택 하자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3 /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 대 상 : 1, 2층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의 건축, 플랜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 전국 도리지방(단, 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 기술지도를 체결치 않은 대상사업장의 제재사항

1.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시 : 안전관리비 20% 환수(법 30조 1항)
2. 기술지도계약 지연 체결시 : 조정금액만큼 환수

- 3. 산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 : 최고 -3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 대 상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 3)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4) 터널공사
- 5) 다목적 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 별 칙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미제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진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대 상 : 1) 중대재해사업장 2) 50m 이상 터널공사  
3)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4) 200m 이상 교량공사
- 벌 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안전컨설팅

- 대 상 : 건설회사 전사업장
- 업무 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2) 현장의 안전관리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 교 육

- 종합안전관리 및 안전경영진단 분사 및 현장을 망라 무재해 도달을 위한 안전관리 대행 또는 지원·지도
  - 안전관리체계 정립 위한 제반지원
  - 안전교육 교재개발 또는 강사지원
- K-OHSMS 18001 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 인증심사원 시범연수기관으로 지정(2001. 6. 19)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지정
- 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 안전관리전문가 양성교육

회원가입안내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여러분의 회원가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진단 및 점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컨설팅, 건설안전교육 등으로 국내 최정상 건설종합안전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회원으로서 건설안전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 가입안내

- 회비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50,000원, 종신회원 500,000원
- 문의 : 회원실 TEL)02-3444-4570 FAX)02-3444-4855
- 온라인 : 하나은행 210-071537-01204, 예금주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비 미납 회원분들의 조속한 납부를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자택 및 직장,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과 기타 공지사항 등을 알려 주시면 회원수첩에 게재하여 드립니다.